
1381 해외인증자료



작성일자 2025.03.01.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원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제품 분류

미국에서는 동물사료 및 반려동물용 간식 및 식품(pet food)도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며 미국 FDA (<http://www.fda.gov/Food>)가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 시에는 FDA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사항은 CFR 21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FFDCA)에 따라 반드시 시설등록 및 라벨링을 해야 합니다. 또한 FDA 일반 식품 규제와 더불어 FSMA법안 중 일부 규제가 2018년부터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 CFR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3ee286332416f26a91d9e6d786a604ab&mc=true&tpl=/ecfrbrowse/Title21/21tab_02.tpl

- FDA > FDA's Regulation of Pet Food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animal-health-literacy/fdas-regulation-pet-food#regulations>

- FDA > Information on Marketing a Pet Food Product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animal-health-literacy/information-marketing-pet-food-product>

- FDA > Pet Food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animal-food-feeds/pet-food>

개요

미국에서는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FDCA)에 따라 사람이 먹는 식품 뿐 아니라 반려동물 및 가축 사료와 같이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과 의약품도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관할합니다.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FFDCA)는 "articles used for food or drink for man or other animals..."라고 식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 사료재료로 사용되기 위한 것, 사료 (feed)나 성분의 일부, 동물 음용수에 추가되기 위한 것은 음식으로 간주되어 해당 규제에 적용됩니다.

해당 법안(FFDCA)은 식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Sections 402, 403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위생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된 식품, 부패되거나 더러운 성분 혹은 식품, 독성/유해 물질을 포함한 식품,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라벨링, 혹은 요구된 정보를 누락한 라벨링의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

참고로 건강식품보조제에 적용되는 법인 "The Dietary Supplement and Health Education Act (DSHEA)" 는 그 대상을 "food for humans"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용 사료나 반려동물식품에 첨가되는 영양제(dietary supplements or "feed supplements" for animals)도 DSHEA가 아닌 FFDCA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사용 용도에 따라 "foods" 혹은 "new animal drugs"로 간주되며 적용되는 규정은 CVM에 의해 마련된 기준에 따라 케이스별로 결정됩니다.

FDA는 다양한 메커니즘(cooperative agreements, contracts, grants, memoranda of understanding and partnerships)을 통해 주(state)/지역파트너(local partners)와 협력하여 동물사료(animal feed)의 규정을 이행합니다. 예를 들어, FDA는 동물사료 제품을 규제하는 일관된 정책의 시행을 위해 동물의 사료와 식품의 표준을 배포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미국 동물사료 관리협회 Association of American Feed Control Officials (AAFCO), 주(States)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일원화된 사료 성분 정의와 사료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는 적절한 라벨링을 제정을 포함합니다.

성분(ingredient)의 대한 정의(definition)는 매우 중요한데 제품이 거래될 때 동물사료와 사료성분(feed ingredients)은 반드시 정확하고 신뢰 가도록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FDA가 동물사료 제품의 사용을 규제할 책임을 가질지라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동물사료제품의 생산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그 제조자와 제품 유통업자에게 있습니다.

Premarket Approval: 시판 전 승인

인체소비용 식품처럼 시판 전 승인(pre-market approval)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사료 내 성분 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육류, 가공류 및 곡물류는 안전하다고 간주(GRAS)되어 시판 전 승인이 필요 없지만, 미네랄, 비타민이나 기타 영양 성분, 향료, 보존료 또는 가공 보조제 등은 일반적으로 의도된 용도에 대해 안전하다고 간주(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된 물질이거나 (21 CFR 582 및 21 CFR 584) 또는 반드시 식품 첨가제로써 승인을 받아야만(21 CFR 570, 21 CFR 571, 21 CFR 573) 할

수도 있습니다.

FFDCA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동물 식품(사료)의 구성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추가되는 물질이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물질(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이 아니라면 반드시 식품첨가제 규정(food additive regulation)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분 마초(forages), 곡물(grains), 대부분의 미네랄과 비타민과 같은 전형적인 사료는 영양소의 근원으로서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에 속합니다.

식품첨가제(food additive) FFDCA 규정

식품첨가제(food additive)의 법적 정의는 FFDCA의 Section 201(s)에 명시되어 있으며 Section 409에는 식품첨가제(food additive) 사용이 식품 첨가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안전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물식품(사료 포함) 완제품의 구성성분이 아니지만 사용되는 물질, 예를 들어, 다른 특성 혹은 다른 식감, 풍미를 주기위해 동물식품의 성분을 준비하는데 사용되는 물질도 식품첨가제가 될 수 있습니다.

FDA 식품첨가제의 근간은 식품첨가제 청원(petition)을 승인하는 시스템입니다. GRAS에 속하지 않으며 식품첨가제로도 허용되지 않은 식품 성분의 사용은 규제 위반을 야기하여 미국에서 법적으로 시판될 수 없습니다.

FFDCA Section 409는 식품첨가제의 승인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FFDCA Section 409(c)(3)에 따라 FDA는 제출된 자료의 충분한 평가 후, 이것이 해당 규정에 명시된 사용조건대로 식품첨가제를 사용할 경우 안전함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식품첨가제 청원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청원자가 이를 준수할 경우만 식품첨가제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Title 21, Part 570 of the CFR은 동물 사료에 사용되는 식품첨가제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을 다룹니다. Title 21, Part 571 of the CFR은 청원자가 어떤 종류의 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와 청원 양식(required format)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Title 21, Part 570 of the CFR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CFRPart=570>

- Title 21, Part 571 of the CFR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CFRPart=571>

주로 식품첨가제의 구성과 용도에 따라 청원마다 실제 내용은 상이할 수 있지만, 보통 다음의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 a) Human food safety;
- b) Target animal safety;
- c) Environmental impact;
- d) Utility (intended physical, nutritional or other technical effect);
- e) Manufacturing chemistry;

- f) Labeling (in addition to information required under Title 21, Part 501 of the CFR, labeling may include cautions, warnings, shelf life, and directions for use);
- g) Proposed regulation

승인된 동물 사료용 식품첨가제 목록은 Part 573에 있으며 동물 사료용 GRAS물질 목록 일부(partial list)는 section 582 of Title 21 of the CFR에 있습니다. 동물사료용 GRAS로 확인된 물질은 21 CFR 584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section 582 of Title 21 of the CFR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CFRPart=582>

- 21 CFR 584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CFRPart=584>

방사(Irradiation) 역시 식품 첨가제로 간주되며 동물사료용 방사에 대한 승인은 21 CFR 57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FDA > Determining the Regulatory Status of a Food Ingredient

<https://www.fda.gov/Food/IngredientsPackagingLabeling/FoodAdditivesIngredients/ucm228269.htm>

- FDA > Food Additive Petitions for Animal Food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DevelopmentApprovalProcess/ucm056809.htm>

라벨링 및 홍보문구

연방 라벨링 요구사항(federal labelling requirements)뿐만 아니라, 동물 사료제품은 각 주법이 적용됩니다. 많은 주 규정에 따라 사료에 부착된 라벨은 반드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Brand Name, if any, •Product Name; •Purpose Statement; •Guaranteed Analysis; •List of Ingredients; •Directions for Use; •Warning or Caution Statements; •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er; and •Quantity Statement. |
|--|

미국 내 동물용 사료 및 펫푸드(pet food)에 대한 라벨링은 국가 차원의 라벨링 요건과 각 주별 규제의 2가지 단계(regulated at two levels)로 구성됩니다.

- FDA에 의한 국가 차원의 라벨링 항목

적절한 제품명(identification of the product), 순중량(net quantity statement), 제조자/유통업자의 명칭 및

주소(name and place of business of the manufacturer or distributor), 무게기준 가장 많은 함유량 순서로 나열된 모든 제품성분 목록(proper listing of all the ingredients in the product in order from most to least, based on weight.)

국내 라벨링 성분분석

아래의 기관에서는 미국수출식품 및 기능식품의 성분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명: 한국식품연구원 (www.kfri.re.kr)

전화번호: 031-780-9292~3

이메일: foodlab@kfri.re.kr

* 수출식품영양표시분석: http://www.kfri.re.kr/cntntsService.do?menuId=MNU_0000000000000350

* 식품분석 수수료: http://www.kfri.re.kr/cntntsService.do?menuId=MNU_0000000000000357

기관명: 한국기능식품연구원(KHSI) (<https://www.khsi.re.kr/>)

전화번호: 031-628-2400

* 검사업무 https://www.khsi.re.kr/business/business_01_07.asp

- 각 주별 규제

몇몇 주(states)는 그들의 고유 라벨링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규정들은 the Association of American Feed Control Officials (AAFCO)에서 제공한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states)에서 AAFCO에서 규정한 좀 더 구체적인 규제를 채택합니다.

예) 보증된 분석(guaranteed analysis), 영양 적합성 선언, 섭취 주의사항, 열량(칼로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바랍니다.

AAFCO에 대한 정보는 아래 AAFCO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ssociation of American Feed Control Officials (AAFCO)

<https://www.aafco.org/>

라벨링 요구사항(labeling requirements)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 FDA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FDA > Pet Food Labels - General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animal-health-literacy/pet-food-labels-general>

* 출처

- FDA > Information on Marketing a Pet Food Product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animal-health-literacy/information-marketing-pet-food-product>

- FDA > Pet Food > labeling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animal-food-feeds/pet-food>

FDA는 또한 “maintains urinary tract health,” “low magnesium,” “hairball control.” 와 같은 펫푸드에 대한 특정한 효능문구(claims)를 검토합니다. 요로 건강에 대한 효능(urinary tract health claim)을 표시하기 위한 자료(data) 수집 가이드스(guidance)는 Guideline 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DA > CVM > Guideline 55

CVM GFI #55 Supportive Data for Cat Food Labels Bearing "Reduces Urinary pH Claims: Protocol Development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animal-food-feeds/pet-food>

* 참고

- CVM GFI #122 Manufacture and Labeling of Raw Meat Foods for Companion and Captive Noncompanion Carnivores and Omnivores

<https://www.fda.gov/media/70183/download>

- CPG Sec. 690.150 Labeling and Marketing of Nutritional Products Intended for Use to Diagnose, Cure, Mitigate, Treat, or Prevent Disease in Dogs and Cats

<https://www.fda.gov/media/83998/download>

주별 규제

미국 내 주별로 라벨링 규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라벨링 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 내 수입 업체를 통해 유통지역의 라벨링 규제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별 등록(registration) 및 라벨링(labeling) 요구사항에 관련한 상세 정보는 제품이 유통될 각 주별로 검토하거나 AAFCO의 공식 자료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업데이트되는 이러한 자료의 사본은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The Association of American Feed Control Officials

<https://www.aafco.org/>

The Association of American Feed Control Officials > Regulatory (주별규제 확인)

<https://www.aafco.org/regulatory>

Email AAFCO@aafco.org

Phone 217-356-4221

Fax 217-398-4119

AAFCO와 FDA는 Animal Feed Regulatory Program Standards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였습니다.

이는 일명 사료 규격(feed standards)라고 불리며 주별로 해당 규격 채택여부가 상이합니다. 해당 규격을 채택한 주는 아래 FDA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nimal Feed Regulatory Program Standards (AFRPS) 규격을 채택하고 있는 주

FDA > Regulatory Program Standards > Animal Feed Regulatory Program Standards (AFRPS)

<https://www.fda.gov/ForFederalStateandLocalOfficials/ProgramsInitiatives/RegulatoryPrgmStnds/ucm475063.htm>

FDA 관할센터

the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CVM)은 동물식품(feed) 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 사료 오염물질(feed contaminants) 규격 제정 및 감시
- 안전한 식품 첨가물질(food additives)
- FDA 의료용 사료(medicated feed) 반려동물용 식품(pet food) 프로그램 관리

※ Contact FDA

240-402-7002

AskCVM@fda.hhs.gov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7500 Standish Place, HFV-1 Rockville, MD 20855

동물 사료 관련 연방 규정 준수를 위한 정보 제공 및 현재 이슈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를 담당합니다.

아래 연락처에 문의하면 동물사료 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ivision of Animal Feeds, (HFV-220)

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7519 Standish Place

Rockville, Maryland 20855

Phone 240-402-7077

Fax 240-453-6882

식품 제조 시설 등록(Food Facility Registration)

또한 사료의 경우에도 일반 식품처럼 FDA에 제조시설 등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등록대상시설은 연방 규정집 21 CFR 1.225 및 1.226(면제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1 CFR 1.225~1.227 Registration of Food Facilities - General Provisions

www.ecfr.gov/cgi-bin/text-idx?SID=2c3e5d78a4918431ef13d909b9af4fef&node=sg21.1.1.h.sg0&rgn=div7

식품시설등록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시설, 대표자, 생산식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해외 시설 등록 시에는 미국 현지 대리인(주로 수입업자)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FDA > Food Facility Registration → 등록을 위해 먼저 계정 생성이 필요

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oodFacilityRegistration/default.htm

식품시설 등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DA에서 배포하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FDA > Guidance for Industry: Questions and Answers Regarding Food Facility Registration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ucm331959.htm>

등록 시설은 매 짝수 해 10~12월 중에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17년에 등록한 경우, 2018년10월~12월에 재등록이 요구됩니다.

- FDA > Food Facility Registration User Guide: Biennial Registration Renewal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oodfacilityregistration/ucm324780.htm>

참고로 통조림에 들어 있는 사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산성 통조림 식품 규제(low acid canned food regulations)에 따라 가공되어야만 합니다.

- 21 CFR 113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fr/CFRSearch.cfm?CFRPart=113>

공장등록 (Establishment Registration), 공정등록 (Process Filing)

미국 FDA는 멸균 밀봉된 식품, 저산성(low-acid) 밀봉식품 혹은 산성화(acidified) 식품 등 저장기간이 긴 특정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밀봉식품 공장등록(Food Canning Establishment: FCE)을 요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제조자는 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제품 각각의 생산 공정 절차를 FDA에 등록(Process filing)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이 저산성 밀봉 식품 또는 산성화식품에 해당하는지 (캔, 병 및 기타 저장기간이 긴 식품이 주로 해당)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정의는 21 eCFR Part 114 Acidified Foods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ecfr.gov/cgi-bin/text-idx?c=ecfr&sid=76b92a612816f429f6f319c0887e13f1&rgn=div5&view=text&node=21:2.0.1.1.13&idno=21>

(a) *Acid foods* means foods that have a natural pH of 4.6 or below

(b) *Acidified foods* means low-acid foods to which acid(s) or acid food(s) are added; these food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beans, cucumbers, cabbage, artichokes, cauliflower, puddings, peppers, tropical fruits, and fish, singly or in any combination. They have a water activity (aw) greater than 0.85 and have a finished equilibrium pH of 4.6 or below. These foods may be called, or may purport to be, “pickles” or “pickled ___.” Carbonated beverages, jams, jellies, preserves, acid foods (including such foods as standardized and nonstandardized food dressings and condiment sauces) that contain small amounts of low-acid food(s) and have a resultant finished equilibrium pH that does not significantly differ from that of the predominant acid or acid food, and foods that are stored, distributed, and retailed under refrigeration are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this part.

(d) *Low-acid foods* means any foods, other than alcoholic beverages, with a finished equilibrium pH greater than 4.6 and a water activity (aw) greater than 0.85. Tomatoes and tomato products having a finished equilibrium pH less than 4.7 are not classed as low-acid foods.

* 출처 21 eCFR Part 114 - Acidified Foods

<http://www.ecfr.gov/cgi-bin/text-idx?c=ecfr&sid=76b92a612816f429f6f319c0887e13f1&rgn=div5&view=text&node=21:2.0.1.1.13&idno=21>

공장등록과 공정등록은 모두 온라인 (FDA Industry System: www.access.fda.gov)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양식 및 양식작성요령은 아래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stablishment Registration & Process Filing for Acidified and Low-Acid Canned Foods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oodfacilityregistration/acidifiedlacregistration/ucm2007436.htm>

사료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의 개요를 확인하시려면 반드시 아래 FDA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하여주십시오. 페이지 하단의 Additional Information와 왼쪽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DA > Animal & Veterinary > Products > Animal Food & Feeds > Product Regulation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Products/AnimalFoodFeeds/ucm050223.htm>

※ 출처

- FDA Animal & veterinary > Animal Food & Feeds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Products/AnimalFoodFeeds/default.htm>

- FDA > Animal & Veterinary > Products > Animal Food & Feeds > Product Regulation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Products/AnimalFoodFeeds/ucm050223.htm>

- FDA Animal & veterinary > Animal Food & Feeds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Products/AnimalFoodFeeds/default.htm>

- FDA > Animal & Veterinary > Products > Animal Food & Feeds > Ingredients & Additives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Products/AnimalFoodFeeds/IngredientsAdditives/default.htm>

참고] FDA는 동물 사료도 식품으로 보고 있으며 식품에 적용되는 FSMA법 중 2018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가 있으므로 업체는 이에 대비하여야합니다. FSMA법의 개요 및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주십시오.

※ 다만, 해당 규제는 FDA에서 분류하는 소기업여부에 따라 적용 시기가 상이하므로 FDA분류 기준에 따라 업체규모를 판단하십시오.

- KOTRA 해외시장뉴스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0334>

미국 식약청의 식품안전현대화법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미국 정부는 2011년 1월 4일 '사전 예방을 통한 식품 공급 안전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이하, FSMA)을 제정·발효하였고 對미 식품 수출업체는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각종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FDA*는 이 법에 근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시설에 법에서 요구하는 식품안전시스템을 구비하도록 강제하고 위해요소가 있거나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 또한 對미 식품 수출업체에는 '위해요소 분석에 기반한 예방관리*'가 포함된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화된 식품안전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위해요소 분석에 기반한 예방관리 : 질병이나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그 중 예방관리가 필요한 위해요소를 식별하여 감소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공정

○ 이 식품안전계획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고 실행 및 기록되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식품예방관리전문가*(PCQI, Preventive Control Qualified Individual)에 의해 검토되어야 합니다.

* 식품안전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거나 PCQI 교육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 식품안전계획에는 위해요소 분석을 통하여 사전 예방관리 가능 항목에 따라 '공정 예방관리', '알레르기 유발물질 예방관리', '위생 예방관리', '공급망 예방관리'로 나누어집니다.

○ 이 각각의 예방관리에는 '모니터링', '시정조치' 및 '검증'의 단계가 포함되어야 하며, '회수계획'을 세워 식품안전에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이와 같이 FSMA에 대응하여 미국에 식품 수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對미 식품 수출업체들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對미 식품 수출업체를 위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 개최 - 식품안전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

기존 FDA는 수입된 식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해 왔으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 따라 식품이 미국에 수입되기 전 미리 정보를 수집해 문제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식품에는 인체 섭취용 식품과 동물용 사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 식품안전현대화법의 7가지 세부사항

1. 식품에 관한 예방적 방제(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현대화된 제조공정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잠재적 식품관련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요구

-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지 등을 보여주는 문서화된 식품안전 계획 요구
- 2. 동물사료에 관한 예방적 방제(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ood)
 - 동물사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행모범제조관행(Current Food Manufacturing Practices) 기준을 수립하여 각 업체들의 준수를 요구
- 3. 농산물 안전성(Produce Safety)
 - 농산물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에 대한 과학적 기반의 안전성 기준을 수립
- 4.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 수입업체에게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품과 동일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해 생산하고 있는지 입증을 요구
- 5. 제 3자 인증(Third Party Certification)
 - 식품안전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제 3자 인증기관을 통해 해외식품시설이 FDA의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 및 인증
- 6. 위생적 운송(Sanitary Transportation)
 - 식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식품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위생적인 방법을 요구
- 7. 고의적 식품변조 (Intentional Adulteration)
 - 공공보건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식품업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산시설을 검토하고 자체 취약성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요구

최종규제(Final Rule)

- 생산 안전(Produce Safety)
- 수확 전 농업용수(Pre-Harvest Agricultural Water)
- 공인된 제3자 인증(Accredited Third-Party Certification)
- 식품이력추적(Food Traceability)
- 인간과 동물을 위한 식품 수입업체를 위한 외국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FSVP) for Importers of Food for Humans and Animals)
- 식품 분석을 위한 실험실 인증(Laboratory Accreditation for Analyses of Foods (LAAF))
- 고의적 변조로부터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완화 전략(Mitigation Strategies to Protect Food Against Intentional Adulteration)
- 인간 식품에 대한 예방적 통제(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s)
- 동물성 식품에 대한 예방적 관리(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ood)
- 인간 및 동물 식품의 위생 운송(Sanitary Transportation of Human and Animal Food)

※ 출처

- FDA > FSMA Rules & Guidance for Industry

<https://www.fda.gov/food/food-safety-modernization-act-fsma/fsma-rules-guidance-industry>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2018년 규제별 준수일

http://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85641&menu_dept2=35&menu_dept3=75

▶ 동물용 사료의 FSMA 규제

* FDA > Animal Food & Feeds >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and Animal Feed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Products/AnimalFoodFeeds/ucm347941.htm>

FSMA aims to ensure the U.S. food supply is safe by shifting the focus from responding to contamination of the food supply to preventing it. The law applies to human food as well as to food for animals, including pets.

- FDA는 FSMA에 따라 동물용/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가 의무를 충족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모든 동물용/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인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동물용/반려동물 사료/취급을 규제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FSMA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 사료에 대한 예방 관리(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ood, PCAF)
 -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FSVP)
 - 식품 및 사료 위생적 운송(Sanitary Transportation, ST)

※ 출처 해외식품인증 정보포털 > 해외뉴스 > FSMA가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관리한다

<https://www.foodcerti.or.kr/announce/articleView/board/foreignNews/article/163/page/15>

동물 사료에 대한 예방 관리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ood)

이 역시 동물사료에 대한 CGMPs를 만들고 사료안전계획서를 서면화해 준수해야 합니다. 시행시기는 식품에 관한 방제 규정과 같습니다. FDA의 예방통제 시행령 준수를 위한 PCQI(preventive controls qualified individual)의 고용과 사료안전 계획 마련에 미리 착수해 준수 기한 이후 미국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FDA > 동물 사료에 관한 예방적 방제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ood) (FDA 국문번역본)

<https://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FSMA/UCM463905.pdf>

- FDA > FSMA Final Rule for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ood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366510.htm>

- KOTRA 해외시장뉴스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0334>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 ;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 (FSVP)

: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FDA는 수입업체들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미국 내 반입되는 수입식품 제조업체의 상품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자 증명(Importer Identification)을 해야합니다.
- 2017년 5월 30일부터 식품 및 동물사료가 미국 국경을 통과하려고 할 때,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새로운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수입통관시스템에 각 개별 품목에 대한 시설식별번호(Unique Facility Identifier(UFI))가 요구되며, 수입업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반드시 ACE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 자료 : FDA 홈페이지

- SATPRNEWS 「Are you Prepared for FSVP Compliance? Compliance begins May 30」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 미국 6.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 5.30부터 시행
[http://www.kati.net/homepage/upload/%EC%A7%80%EA%B5%AC%EC%B4%8C%EB%A6%AC%ED%8F%AC%ED%8A%B8%2041%ED%98%B8\(%EB%AF%B8%EA%B5%AD\).pdf](http://www.kati.net/homepage/upload/%EC%A7%80%EA%B5%AC%EC%B4%8C%EB%A6%AC%ED%8F%AC%ED%8A%B8%2041%ED%98%B8(%EB%AF%B8%EA%B5%AD).pdf)
- KOTRA 해외시장뉴스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0334>

식품 및 사료의 위생 운송

FDA > 식품 및 사료의 위생운송에 관한 FSMA 최종규정 (FDA 국문 번역본)
<https://www.fda.gov/downloads/Food/GuidanceRegulation/FSMA/UCM499952.pdf>

※ 출처

- 중앙일보 > 식품 안전 위해 FDA 규제 강화된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755062
- KOTRA 해외시장뉴스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0334>

※ FDA 참고링크

- USDA > Feed Safety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https://www.aphis.usda.gov/animal_health/animal_dis_spec/swine/downloads/meeting/presentations/25%20-%20A7%20-%20Jordre.pdf
- FDA > Animal Food & Feeds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Products/AnimalFoodFeeds/default.htm>
- FDA > Safe Feed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SafetyHealth/AnimalFeedSafetySystemAFSS/default.htm>
- FDA > FSMA Final Rule for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ood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366510.htm>
- FDA > Overview of FDA's Animal Feed Safety System
<https://www.fda.gov/downloads/AnimalVeterinary/SafetyHealth/AnimalFeedSafetySystemAFSS/UCM277673.pdf>
- FDA > Veterinary Feed Directive (VFD)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DevelopmentApprovalProcess/ucm071807.htm>
- FDA >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and Animal Feed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Products/AnimalFoodFeeds/ucm347941.htm>
- FDA > Animal Feed Regulatory Program Standards (AFRPS)
<https://www.fda.gov/ForFederalStateandLocalOfficials/ProgramsInitiatives/RegulatoryPrgrmStnds/ucm475063.htm>
- FDA >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and Animal Feed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Products/AnimalFoodFeeds/ucm347941.htm>
- FDA > Feed/Food Guidances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GuidanceComplianceEnforcement/GuidanceforIndustry/ucm123812.htm>
- FDA > Food Safety Preventive Controls Alliance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284406.htm>

참 고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재해 드렸습지만, 식품 수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www.at.or.kr) 또는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www.kati.net)의 aT센터수출애로상담 콜센터(02-6300-1119, 02-6300-1120)를 이용하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4월, 한국식품연구원을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로 지정하고 對미 식품 수출업체들의 FSMA 이해도 제고 및 식품안전계획 문서작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식품연구원 <https://www.kfri.re.kr/>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FSMA” 검색) <http://www.kati.net/index.do>
- 해외식품인증 정보포털 (“FSMA” 검색) <https://www.foodcerti.or.kr/>

유의 사항

▶ 유의사항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 강제인증보다는 각 주별 규제 및 민간 인증이 통용되는 형태로 사전인증제도보다는 리콜/처벌 등의 엄격한 사후 관리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보증할 책임은 제조자/수입업자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시 세관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사후에 문제 발생 시 매우 엄격한 민/형사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주별규제

또한 미국은 50개 주(州)로 이루어진 국가로 연방법과 주법이 공존하고 있으며 주별로 각종 민간기관의 실험·연구 등으로 기준화 및 규격화된 규격을 채택하여 강제하거나 주별 규제를 따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민간/자율인증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강제인증과 같이 통용될 수 있으며 해당품목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 내 강제처럼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마다 규제여부 및 내용이 상이하므로 주별 규제 및 임의인증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지 바이어/수입업체를 통해 현지에서 요구되는 인증이나 규제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국가차원의 규제에 대해서만 대응이 가능하며, 주별 규제는 저희 1381인증표준콜센터의 업무 대응 범위를 벗어나므로 해당 건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수입업체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는 환경규제인 The Proposition 65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물질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특정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경고라벨을 부착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예) OEHHA > Proposition 65

<https://oehha.ca.gov/proposition-65>

OEHHA > The Proposition 65 List

<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

TUV SUD > California Proposition 65 > 캘리포니아 법령 65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https://www.tuv-sud.kr/kr-kr/activity/testing-product-certification/california-proposition-65>

▶ 임의인증

강제 인증이 없어도 민간단체에 의한 임의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요구사항, 규제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용도의 여타 강제 인증과는 달리 민간 임의인증은 임의, 자율인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받거나 현지 수입자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 자체적으로 제품을 증명하는 품질인증이므로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는 규격을 선택하여 시험하신 후 DoC를 발행하시거나 해당 규격에 대한 인증제도가 있을 경우 시험 후 해당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DoC는 말 그대로 업체 본인이 선언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양식은 없으며 온라인상에 게재된 DoC form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수출관련 인증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인증사항 이외의 세금 및 HS Code는 현지 세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내해드리는 내용은 소비자제품에 대한 미국 연방규제(강제)를 중점으로 두고 있으며 이외에 주별 규제와 민간 사기업 규정(예: 아마존)은 저희 업무범위를 벗어나므로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수입업체 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센터의 해외인증조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학습·연구·자료수집 목적의 문의, 해당조사를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사설 컨설팅, 대행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는 해당 서비스 대상이 아니므로 대응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미국 현지의 수입업체 또는 관련인증기관, 현지 KOTRA 무역관, 컨설팅기관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동향이나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정보는 해당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지 바이어/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KOTRA 북미지역본부: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13755>

뉴욕무역관(미국) / 달라스무역관(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미국) / 마이애미무역관(미국) / 시카고무역관(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미국) / 워싱턴무역관(미국)

또한 KOTRA 홈페이지의 문의/상담 메뉴를 통해 상세 내용에 대해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답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작성일자 : 2025.03.01.]

- 이용 방법: KOTRA 홈페이지(회원 가입 필요) ⇒ '문의·상담' 메뉴 ⇒ 전화, 챗봇, 온라인 상담 선택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 한국무역협회 Trade Pro 무역애로상담 1566-5114 (로그인 필요)

<https://kita.net/tradePro/tradeProMain/tradeProMain.do>

▶ 규격

규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사거나 한국표준정보망 (KSSN)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관련 규격 파악

- 규격 구입: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

▶ 시험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인정 국내 시험소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서는 특정 기관이 수행하는 시험/교정 등의 세부 항목에 대해 인정하고 해당 분야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각 시험기관의 적격성을 인정하며, 공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즉, 특정 규격/시험에 대해 KOLAS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 KOLAS 시험기관입니다.)

- 한국인정기구 KOLAS > 시험기관검색

<https://www.knab.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비 KOLAS 기관

위의 KOLAS 기관이 아니어도 시험이 가능한 기관은 많으며, 미국 수출이 목적이라면 미국계 시험기관이나 미국 내 시험기관 또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등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제인증기관 한국 지사

그 외에 품목별로 시험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진출해 있는 국제인증기관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소재한 대표적인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기재)

※ 업무대행기관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지원 사업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유관기관의 각종 해외인증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mes.go.kr/exportcenter/>

- 2025년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lIdx=1055513>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https://www.smes.go.kr/globalcerti/main.do>

: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3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25년 공고 미정)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ktrInfo.do?key=9093>

- 사업명 : 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트랙 3차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일반트랙 3차) 15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545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 70% 지원

- 이미 공고된('24. 2. 29.) 패스트트랙인증* 지원은 당시 공고기준을 따름

구분	내용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패스트트랙 인증(7개 인증 6개 분야) : 유럽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국제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FDA(의료기기 Class1)
일반트랙	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유럽 CE(의료기기 등 패스트트랙 이외에), 중국 NMPA, 미국 FDA 등

* 패스트트랙 지원 대상 인증은 일반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하며, 일반트랙 지원 대상 인증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

- 모집 기간

구분	기간
패스트트랙	24년 2월 29일(목) 09:00 ~ 8월 30일(금) 18:00까지(상시 모집) *패스트트랙은 상시 접수(3월-8월)를 통해 월별 간이 심사로 평가를 진행하여 대상 기업을 선정
일반트랙	'24년 8월 1일(목) 09:00 ~ 8월 30일(금) 18:00 까지 *일반트랙은 총 3차(2월, 5월, 8월)로 나눠 공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기업을 선정

- 신청방법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회원가입 → 로그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패스트트랙/일반트랙] 구분 신청

※ 각 시도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도 있으니 해당 지역의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마당 비즈인포 > 지원사업 공고 > 수출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list.do>

- 기업마당 비즈인포 > [경남] 2025년도 글로벌 강소기업(강소·강소+)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103662

- 기업마당 비즈인포 > [충북] 충주시 2025년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 충주관 참여기업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103633

※ 해외조달정보 관련 문의

- 기업마당 비즈인포 > 2025년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103630

- 해외조달정보센터

<https://globalkoreamarket.go.kr:8843/gpass/index.do>

- 해외조달정보센터 > 해외조달정보 > 해외입찰정보

<https://globalkoreamarket.go.kr:8843/bbs/selectBoardList.do?boardId=GPASS004>

※ 주 의 !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 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 페이지의 일부 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 참고,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기간은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 시험기관, 귀사의 관련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연락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